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802
----------	-------

제안연월일 : 2026. 8.

제안자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2203992호)	임이자의원	2024.09.12.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 2차 전체회의(2026.7.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 회부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2695호)	차지호의원	2025.09.0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6540호)	김소희의원	2026.02.03.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6716호)	조지연의원	2026.02.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580호)	김소희의원	2025.12.24.	

나.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
(2026. 8. 10.)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2026. 8. 13.)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위기 적응 등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한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시책의 수립·추진,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계층·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하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정부는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결과 및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 상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탄소중립

기본법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7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기후위기 적응 정책 협의를 위하여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며,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차.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점검·평가할 수 있음(안 제19조).

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계획 수립·시행 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 확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

하. 기후위기 적응산업의 육성,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근거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 등을 명시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이하 “분

야별”이라 한다)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분야별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사회전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8.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본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말한다.

9.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10.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본법 및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며,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적응대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4.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계층·지역에 대하여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대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분야별 적응대책 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에 대한 장기 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보급하고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대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응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대책 및 관련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및 기후위험 평가

제7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9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4. 제10조에 따른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과 관련 방법론의 개발
5. 제11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의 개발
6. 그 밖에 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정부는 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

기 위하여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분야별 영향,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관리·활용 및 공개 주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정부는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및 산업계 등과 적응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인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이하 “기후영향 및 취약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후위험 평가)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4.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5.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계획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계획
6.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7.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

시대 종합계획

10. 그 밖에 기후위험 평가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취약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평가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제10조에 따른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제11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취약기관 및 관계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

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시각화 방법, 공개 수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13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분야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야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책 중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7. 기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녹색국토의 관리 시책 중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8. 기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중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분야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추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기상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국가유산청의 차관급 공무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사전 협의

3. 제20조에 따른 적응 확산 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주요 기후위기 적응정책 및 적응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국가보고서 중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

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기후위기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도별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는 관할 지역 유역·지방 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 기본법 제6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 및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취약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후위기 적응 진척도 점검 등) ① 정부는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 역량을 높이며, 기후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장기적인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이하 “적응성과등”이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등의 점검·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성과등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등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후위기 적응 확산)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후영향 및 취약성, 기후위험 등을 고려하고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확산에 대한 평가(이하 “적응 확산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
 2.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3.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녹색국토의 관리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분야·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 확산을 위해 필요한 행정계획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 확산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 확산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 확산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적응 확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후회복력 증진

제21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이상기후 등이 초래하는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 자연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결과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③ 정부는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후보험)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이하 “기후보험”이라 한다)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후재난 발생 시 손해액 산정 및 지급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보험의 활성화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정책 기반 조성

제2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2. 제13조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3.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

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기후위기 적응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와 적응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정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33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응정보관리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 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은 각각 이 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으로 본다.

제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본다.

제9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응 방안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각각 이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8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40조제2항·제4항”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 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

리체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 제

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 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